

진흥회게시판

전자제품 수출추천 요령 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27호
수출입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27호)
제8조에 의하여 전자제품 수출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1. 16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수출추천대상품목

H S	추천대상품목 및 지역
8516.50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EU)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VTR) (EU, 미국)
8523.13	비디오 녹화용 테이프(EU)
8540.11	천연색의 텔레비전용 음극선관(EU)

2. 추천기준

- 가. 수출자유규제 대상품목은 동 운영요령에 의한 다.
- 나. 기타품목은 제한없이 추천한다(다만, 필요시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처리기한 : 즉시

4. 구비서류

- 가. 수출승인신청서 4부
- 나. 수출신용장(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추천장소

- 가. 한국전자공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 나. 한국무역협회 지부
 - 부산지부(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7)
 - 광주전남지부(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 전북지부(전북 전주시 금암1동 669-2)
 - 대전충남지부(대전시 서구 월평동 519)

- 대구경북지부(대구시 동구 신천4동 299-2)
- 충북지부(충북 청주시 운천동 1571)
- 경남지부(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 인천지부(인천시 남구 주안동 989-1)
- 강원지부(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
- 경기지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96전국발명진흥대회 포상신청 안내

1. 행사목적

무한경쟁, 기술전쟁의 시대에 대비하여 전국민의 발명사상 양양과 발명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우수발명을 적극 창출하고 신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함.

2. 행사내용

- 가. '96전국발명진흥대회 포상식
 - (1) 일시 : 1996. 5.20(월) 11 : 00
 - (2)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
 - (3) 주최 : 특허청
 - (4)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 (5) 후원 : 통상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변리사회

3. 포상의 종류

- 훈격별 : 산업훈장(금, 은, 동, 철, 석),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특허청장 표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표창, 한국무역협회 회장 표창,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표창, 한국발명진흥회 회

진흥회게시판

장표창, 대한변리사회 회장 표창

○ 부문별

- 개인 : 발명특허유공자, 우수개인 및 직무발명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특허기술상 수상자
- 단체 : 우수특허관리업체, 우수발명반운영학교

4. 포상 및 표창추천 대상

가. 개인

(1) 발명특허유공자

- 산업재산권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관련단체 임직원

(2) 우수개인 및 직무발명자

- 발명·고안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발명·고안품으로 수출에 크게 기여한 자
- 발명·고안의 출원, 등록실적이 많은 자
- 국내외 발명품전시회 수상자

(3)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 학생발명활동 진흥에 크게 기여한 발명반 지도교사

(4) 특허기술상 수상자

- 전년도 특허기술상 수상자로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단체

(1) 우수특허관리업체

-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산업재산권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기여한 업체
-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출품 또는 수상한 업체

(2) 우수발명반 운영학교

- 발명반운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 발명품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교
- 발명고안의 출원, 등록실적이 많은 학교

5. 추천 및 신청요령

가. 추천단체 : 8개 단체(직능별)

나. 일반신청 : 개인, 기업체, 학교

다. 신청기간 및 접수처

(1) 신청기간 : 1996.1.22~2.22

(2) 접수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17 성우아카데미센터5층 (우)137-070)

(전화 : (직통)565-6310, 557-1077/8

교환 : 243, 팩스 : 554-1532))

(3) 제출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공적서 2부
- 단체현황 1부(해당자에 한함)
- 발명성공사례 1부(발명특허유공자만 제외)
- 산재보험가입 증명서 1부(기업대표 및 임원과 단체 신청자에 한함)
- 발명품전시회 및 직무발명경진대회 수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안내

법률 제5,085호('95.12.29 공포)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설비”라 함은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3.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제 3 조 (종합시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개선·청정생산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환경촉진을 위한 환경설비 산업의 육성방안
5. 환경경영의 촉진방안
6. 기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에너지소비수준·공업용수 사용수준·자원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이 종합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정책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종합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산업환경실천과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유합리화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조 (설비자금등 지원)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4.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관련 자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기술개발사업지원)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
2. 제4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②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개발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5.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제 7 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정생산기술 관련사업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촉진등) ①정부는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생산기술정보의 모집·분석·가공·보급 및 데이터 베이스의 제작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9 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 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설비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개척
5. 기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0 조(환경설비품질인증) ①공업진흥청장은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공제사업)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훼손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 12 조(보조금의 지급)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본부가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민간추진본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의 발굴 및 건의
3.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4. 외국관련기관과의 환경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 14 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지역의 기업·학계·연구소·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추진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협의 등 산업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제 15 조(환경경영의 촉진) 정부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이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 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①공업진흥청장은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경영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이하 “환경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7 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공업진흥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 18 조(환경경영체제인증) ①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환경경영체제인증의 절차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9 조(환경경영체제인증의 표시) ①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연수기관의 지정) ①공업진흥청장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육성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유도·감독할 수 있다.

④연수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17조의 규정은 연수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는 “연수업무”로 제16조 제2항은 제20조 제4항으로 본다.

제 22 조(심사원) ①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심사원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심사원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심사원인증기관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심사원의 자격기준·사후관리 기타 자격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인증비용등) 인증기관·연수기관 또는 심사원인증기관은 당해 기관의 업무규정(공업진흥청장이 심사원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

체제인증, 연수 또는 심사원자격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24 조(우수사례의 발굴·홍보) 홍보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환경실전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 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 26 조(첨문) 공업진흥청장은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산업환경정책심의회) ①사업자 및 산업·환경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을 도모하고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

진흥회게시판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8 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관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29 조(부칙) ①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7 조 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제 30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9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요한다.

제 31 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증기관, 연수기관 또는 심사원인증기관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129 조 내지 제 132 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육성 기타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

거나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ISO(품질, 환경) 교육안내

산업경영기술에서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으로 부터 지정된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서 1996년을 맞이하여 ISO 9000 및 14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인증의 본산지인 영국의 BSI와 ASTA 및 PIQA의 한국내 License Agreement 체결업체로서 1996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ISO인증관련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BSI 국제환경인증심사원 과정

ISI14000규격 확정에 즈음하여 그 모태가 되는 BS7750 규격의 제정기관인 영국의 BSI에서 최근 개발한 “국제환경심사원 과정”을 BSI의 해외 교육으로는 국내 최초로(기존교육은 “EXCEL”에서 시행) 한국내에서 동시통역으로 진행함.

○ 일시

1차 : 1996.2.26(월) - 1996.3.1(금) : 4박 5일 합숙(1일 12시간씩)

2차 : 1996.3.4(월) - 1996.3.8(금) : 4박 5일 합숙(1일 12시간씩)

○ 장소

팔레스호텔(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옆)

2. ISO 9000인증실무 및 문서화

ISO인증실무 1, 2권의 저자인(주)산업경영기술의 소인섭사장이 본인 저서를 토대로 직접 강의하므로 ISO요건의 명쾌한 해설과 품질문서의 작성 및 IOS인증절차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

○ 일시

진흥회게시판

1차 : 1996.1.26(금) - ISO9000인증실무

2차 : 1996.2.13(화) - 품질문서화 실무

○ 장소 : 중소기업회관(서울 여의도 소재)

3. 신청 및 문의

(주)산업경영기술-ESK의 지원실로 전화문의 및 FAX신청

TEL : (02)780-6709, 6710

FaX : (02)780-4290

2. KOTRA지원사항

- 전시장 및 기본장치 제공
- 전시품 발송 및 통관지원(발송비는 업체부담)
- 사전홍보 및 상담알선
- 현지입국, 호텔예약 등 기타 행정지원
- 해외시장개척기금 용자추천(조건 : 연리 1.5% 상환기간 2년)

3. 참가신청

- 신청규모 : 9s/m 이상
- 신청기한 : 96.2.15일까지(면적 소진시 조기 마감)
- 참가신청금 : s/m당 15만원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KOTRA소정양식 1부)
참가신청금 납부 무통장입금증 사본 1부
- 참가신청금 송금계좌
상업은행 424-05-001036(예금주 :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 * 참가신청금은 파견업체로 선정시 참가비의 일부로 전환하고 탈락시 반환

4. 문의처 : KOTRA전시사업처 해외전시부(담당 : 진중하)

TEL : 551-4424,

FAX : 551-4437, 4426/557-5784

96중국 성도 한국상품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성도는 사천성을 위시한 중국 서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중심지로서 인구 1억 1천 2백만과 한반도 면적 2.5배가 넘는 방대한 내수 시장, 풍부한 자원, 저렴한 인건비와 중앙아시아의 CIS 국가들과의 변경무역이 활발하여 대외교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연해 개방도시에 실시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95년말로 끝내고 내륙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 같은 특성지역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도에 한국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 명칭 : '96중국 성도 한국상품 전시회
- 기간 : '96.5.14~5.19(6일간)
- 장소 : 사천성 전람관
- 규모 : 1,700s/m
- 성격 : 첫번째 중국 사천성 내륙지역 한국 상품 단독전시회
- 출품유망품목 : 자동횡편기, 편직기, 연사기, 가공기, 염색기, 건조기, 기계류, 전기, 전지, 자동차 및 동용품, 의류, 직물,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기타 종합품목

제19회 동경 국제굿리빙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1. 박람회 개요

- 명칭 : 제19회 동경 국제굿리빙 박람회 ('96 GOOD LIVING SHOW)
- 기간 : '96. 4. 23(화)~28(일)(6일간)
- 장소 : 동경 BIG SITE국제전시장
- 규모 : 42,000 S/M, 세계 30개국 400여개사 참가

- 품목 : 내외장재, 가구, 사시, 샤테, 유리, 인테리어제품, 공구, 도료, 벽지, 조명기구, 은실, 베란다, 발코니, 석재 홈오토메이션, 냉·난방기구, 모델하우스, 주택시공기기 등 주택관련 제품 및 부품

- 성격
일본에서 매년 4월 개최하는 최대규모의 주택 및 동관련제품 전문전으로 다양한 주택관련 제품이 출품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3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전문전임

- 일본의 전자재 시장규모('94년) : 300조원 (39조엔)

2. 한국관 참가계획

- 규모 : 100 S/M
- 유망품목 : 방화셔터, 무선비디오폰, 홈시큐리티시스템, 방재용재료, 사시, 플라스틱 파이프, 수도이음쇠, 공사 현장용 나일론네트, PP SHEET, 실내장식품, 특수도료, 조명기구, 내외장재, 주방용구 등 건축관련 가지재 및 부품
- KOTRA 지원사항 : 참가비 약 40% 지원, 전시장 입차 및 기본장치, 전시품 발송 및 현지통관, 거래알선지원,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추천등

3. 신청방법

- 신청기한 : '96.1.20(토)(부스 소진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KOTRA 소정양식), 참가신청금 납입영수증 사본
- 신청규모 : 최소 9 S/M 이상
- 참가신청금 : 150,000원/SM
- 신청금 납부처
상업은행(구좌번호 : 424-05-001036, 예금주 : 무역진흥)
- 참고사항 : KOTRA 전시회원 우대

4. 문의처

KITRA 전시사업처 해외전시부 최태원
(TEL : 02-551-4423,
FAX : 02-551-4437/557-5784)

아시아개발 연구원 이용안내

1. 설립취지

다가올 21세기에는 우리경제가 아시아 지역의 무역, 정보, 통신, 교통, 금융은 물론 첨단기술 및 문화상품의 생산중심지로 발돋움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저울의 「추」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1992년 국교정상화 아래 우리의 대중국 무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신장되고 있으며, 직접투자 규모도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였다.

7천만 인구의 베트남은 1986년 쇄신정책을 채택한 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외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은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성품이 온후, 근면, 섬세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 또한 풍부한 나라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마지막 남은 「황금의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여년동안 값싸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지 위주의 해외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소비지위주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머지않아 1인당 GNP 2만달러와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고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기업의 국내유치를 통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대일무역역조의 시정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사단법인 「아시아개발연구원」은 중국, 북한,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진흥회게시판

의 거시적 동향과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세제, 노동, 기술 및 관련법령과 행정규정 등에 관한 미시적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시아 지역 진출과 일본기업의 국내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협력 유망업종을 연계하는 한편, 기술이전과 국제금융을 통한 자본조달을 알선해 주는 등 기업자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연구원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지역은 물론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련기관들과 제휴하는 동시에 한국의 출연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조사, 분석업무에 종사했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또한 조사, 분석 자료와 기업자문 경험을 토대로 공무원, 전문가, 기업경영인들과의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당면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 동사진은 아시아개발 연구원(원장 : 송희준)이 세계은행 (IBRD) 후원으로 베트남 관계자 14명을 초청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장면이다.

2. 사업활동

아시아개발연구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 학술발표회, 기업자문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활동

- 세계경제동향과 한국경제의 거시, 무역 및 동향의 조사·분석
 - 아시아 주요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동향의 거시적 조사·분석
 - 아시아 주요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의 조사·분석
 - 아시아 주요지역의 주요산업의 현황 및 전망
 - 아시아 주요지역의 상법, 외국인투자법, 무역법, 세법, 각종 규제 등 법령집의 출판
- (2) 학술발표회 개최
- 베트남 투자환경 국제세미나 개최
 - 중국의주요지역 투자환경 국제세미나 개최
 - 아시아 주요지역의 산업, 경제, 재정, 금융문제 등에 관한 정부 관료, 기업인 및 전문가의 간담회(공개 혹은 비공개)

(3) 기업자문활동

- 아시아 주요지역의 투자 및 기술이전에 관한 기업자문 및 지도
- 일반 경영자문 및 유도
- 산업조사, 시장조사, 신용조사, 기업조사 등의 위탁사업
- 아시아 주요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 PR 활동의 지도·협력

3. 회비 및 회원

(1) 회원구분

- 특별회원 : 대기업
- 일반회원 : 중소기업
- 연구회원 : 대학의 전임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등 개인

(2) 회비 및 상담료

- 입회비(단위 : 원)
- 특별회원 : 500,000
- 일반회원 : 200,000

진흥회게시판

- 회비
 - 특별회원 : 연회비 2,500,000
 - 일반회원 : 연회비 800,000
 - 연구회원 : 연회비 300,000
- 상담료
 - 회원은 무료
 - 비회원의 상담료는 다음과 같다.
 - 1회 상담료(1시간 이내) 50,000
 -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0

(3) 회원특전일람표

당연구원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음

서비스종류	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알기쉬운 베트남 경제		○	○	○
베트남산업정보 (년50회)		○	○	-
각종조사보고자료		○	설비	-
조사비				
연구원내자료	○	○	설비+일반관리비	-
해외현지조사	○	○	설비+일반관리비	-
위탁계약조사	○	○	설비+일반관리비	-
베트남 산업 시찰알선·소개	○	○	설비+일반관리비	-

주 : ○표시는 무료제공

4. 자료발간 계획 및 협력기관

- 자료발간계획
 - 아시아 주요지역의 경제현황(1995년 및 1996년도판)
 -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북한 등
 - 아시아 주요지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집 (2년간 계속사업)
 - 아시아 주요지역의 투자프로젝트 조사·분석 (2년간 계속사업)

- 아시아 주요지역의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조사·분석 (2년간 계속사업)

• 협력기관

- 중국 국무원 발전중심(DRC)
- 일본해외경제조사회
- 일본 벨남경제연구소
-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 세영인터내셔널(베트남 주재)
- UDOM산업주식회사(태국회사)
- 아시안 엔지니어링(서울)

5. 문의처 : ADI아시아 개발연구원

TEL : 3452-5132/5

제1회 경쟁력 대상 추천 안내

1. 제정취지

세계 일류상품의 생산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을 선발·포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화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

2. 시행기관

- 주최 :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 주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3. 응모

- 응모자격 : Global Best Product 생산기업 (결산자료 공시기업)
 - * 세계 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 응모부문 : 완제품/부품·소재
- 응모방법 : 소정양식의 신청서 제출
 - * 1사 복수제품 응모 가능

4. 심사방법

- 예비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 컨설팅 전문가, 경영학 교수 등 사계전문가

진흥회게시판

- 본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현장심사
 - 학계·언론계·경제연구소 등 각계 중진
- 주요 평가기준
 - (시장성과)
 - 수출액 및 증가율
 - 세계시장/국내시장 점유율
 - 대선진국(ECED) 수출비중
 - 동종품목 전체수출액 대비 수출비중
 - (품질경쟁력)
 - 국내외 품질평가기관 평가결과
 - 국내외 수상실적
 - 불량율
 - 국산비율
 - 국내외 특허/공인디자인 건수
 - 해외전시회 참가 회수
 - 고유브랜드 수출비중

- 대상(1)
- 완제품 부문(2)
- 부품·소재 부문(2)
- (포상)
- 고유도안 상비, 홍익지원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서	소정양식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홍보팜플렛도 가능
평가조서	(유첨)	
회사/응모제품	소정양식	
소개서	(유첨)	
기타		

※ 소정양식의 기술서는 A4용지로 통일

7.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응모 접수	1월25일~2월17일	수상기업 개별통보 수상기업의 세계일류화 성공사례 발표회 병행
예비심사	2월19일~3월 2일	
본심사	3월 4일~3월 9일	
시상식	3월말	

8. 접수 및 문의처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경제연합관) ☎150-756
 전경련 경쟁력강화실 Tel.780-0821/30
 Fax.784-1640

5. 시상내역 (부문)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